

'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견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시 및 제안자 : 1992. 8. 14

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. 8. 21

다. 상정일자 : 1992. 8. 21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 : 별첨안 참조

나. 주요골자 : 별첨안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별첨 보고서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: 하단동 1162-1, 하단동 1162-2번지와 하단동 1161-3번지 교환하는 것은 좋으나 인접 1162-3번지 토지도 동사무소 부지에 포함되는지

답변 : 교환후 하단동 1162-3번지 토지는 1161-3번지에 합병됨.

5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 습

나. 찬성토론 : 없 습

다. 표결결과 : 재석위원 12명(전원 찬성)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처리